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21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졸업가능자만 제출)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확인방법: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
2. 접수기간: 2021. 11. 29.(월) ~ 12. 10.(금)
3. 접수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교직업무**→ **무시험검정신청**
4.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2021. 12. 10.(금) 17시까지 소속학과(전공) 사무실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반드시 본인 서명하여 제출)**
나.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서류
 -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1부**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 참조
 - 2) **성범죄경력조회**: 무시험검정원서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서명하여 제출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다. 영양사면허증 사본(원본 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1부.
5. 기타 안내
가. 인적사항 정정 관련 안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과 실제 인적사항이 상이할 경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1)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 주민등록등본 1부
 - 2) 주민등록번호 정정: 주민등록초본 1부
6. 유의사항
가. 교직 복수 중이라도 원서는 주전공에만 제출합니다.
나. 기존에 서류를 제출했던 학생(현재 졸업연기중인자 등)도 반드시 다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2021. 8월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학생은 재사용 가능함(교무학사부 개별 문의)**
⇒ ‘7호기준’ 대상자(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포함
다. 졸업연기예정자, 초과학기희망자(졸업학점 부족)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졸업(교직)학점 부족한 학생은 **여름계절수업 가능 여부 문의**
- 라.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단, <교직 포기원>을 반드시 제출(사범대 행정실(5126))
- 마. 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나 교직 필수과목/학점 미이수자는 반드시 졸업논문/시험 이수 후 졸업연기신청 해야 합니다.
★ 졸업논문/시험을 미이수하여 수료자가 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함.
- 바. 식품영양학과의 경우, 영양사면허증 취득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단, 영양사면허증 취득 전 조건부(영양사면허증명서 제출)합격 후 30일 이내 면허증 제출시 가능

◎ 교사자격 취득기준 결격사유 관련 안내

- * 대상자: 2021. 6. 23.이후의 무시험검정 대상자
- * 내용: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기준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신설(아래 법령 참고)되어 안내하오니 서류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조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내용 동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 2021. 6. 23.]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진단서에 반드시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양성’반응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판단하는 의사의 소견을 검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되어야함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예시)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2년 1월~'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발급된 검진결과 인정 가능함
- 검진종류(방법)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간이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 위 법령에 따른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 일반적인 요검사가 아닌 **약품소변검사(TBPE)임** ※ 종합건강검진 아님 주의
- 검진 기관 및 비용(선택 사항)

[권장] - 검진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붙임 파일 참고
 - 검사 비용: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원 / 단독검사시 6,000원

- 검진 기관 : **일반의료기관**(가정의학과, 정신의학과, 내과, 의원 등)
 - 검사 비용: 7,000원 ~25,000원

- 국가건강검진(격년 실시)시 해당검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미 실시자는 단독 검사로 진행
- 진단서로 발급시 추가비용(1만원) 발생함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발급 소요기간: 2~3일 방문 전 사전 확인 및 예약 필요
- ※ **건강검진(약품소변검사)진단서는 검사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교직사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는 교무학사부 053-850-5133)

- 붙임 1. 교육부 안내자료(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판별 관련 안내) 1부.
- 2. 교육부 안내자료(리플렛) 1부. 끝.

2021. 11.
교 무 처 장